

수원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4565 판결 [공사대금 청구 독촉사건]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양

담당변호사 양장열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한

담당변호사 차미경

변론 종결 2021. 4. 13.

판결 선고 2021.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2,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1. 5. 25.까지는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79,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1)로부터 다음2)과 같이 전기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다.

순번	공사현장	계약 일시	공사 기간	공사대금(원)
1	D 호텔 리모델링 공사	2019. 9. 25.	2019. 9. 23.부터 2019. 12. 14.까지	27,500,000
	동구입	2019. 11. 26.		12,795,684
2	용인 E 호텔 리모델링 공사	2019. 10. 23.	2019. 9. 27.부터 2019. 12. 14.까지	16,170,000
3	안산 F 호텔 리모델링 공사	2019. 12. 23.	2019.12. 23.부터 2020. 3. 5.까지	39,270,000
합계				95,735,684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26.부터 2020. 3. 18.까지 사이에 합계 93,303,07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134,990,646원 중 피고로부터 93,303,078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미수 공사대금 41,687,568원3)(= 134,990,646원 -93,303,07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항목	공사비용	등기구비용	CCTV 설치공사	합계
1	D 호텔	27,500,000원	21,843,728원	1,480,050 원	50,823,778원
2	용인 E 모텔	16,170,000원	2,683,670원		18,853,670원
3	안산 F 모텔	39,270,000원	12,127,918원		51,397,918원
4	기존미수공사대금				13,915,280원
5	합계				134,990,646원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우선 등구입 비용(등기구비용)과 CCTV 설치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중 D 호텔 리모델링 공사의 등구입 비용 12,795,684원을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계약과 별도로 등구입 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등구입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점, 원고는 이 사건지급명령 신청 당시 등구입 비용 등을 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12,795,684원을 제외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기존 미수 공사대금 13,915,280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6. 7.부터2016. 8. 30.까지 진행된 음식점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한 미수 공사대금이라 주장하는데, 피고는 2017. 4. 12. 설립된 회사인 점, 원고는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액수의 미수 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의 가항에서 인정한 95,735,684원에서 피고가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93,303,078원을 공제한 2,432,606원(= 95,735,684원 - 93,303,07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중 E모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E모텔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서는 4,000,000원, 위 공사계약 중 F모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F모텔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서는 5,9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는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E모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래 원고의 공사인 1층 캐노피 천정의 등라인과 외부 간판등 및 간접등의 라인 포설과 등기구 공사를 G으로 하여 금 진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사가 원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된다거나 G이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F모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는, 원래 원고의 공사인 인터넷단선 및 연장, 간판 라인 포설, CCTV배관 및 배선 등의 공사를 H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H의 견적서(을 제4호증)를 보면, 피고는 그 발행일자인 2020.3. 19.보다 앞선 2020. 3. 4.에 H가 아닌 I에게, 5,900,000원이 아닌 13,2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사가 원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된다거나 H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32,606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4.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5.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1) 2017. 4. 12. 설립

2) 다만, 순번 1과 관련하여 등가입 비용에 대해 원고는 21,843,728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아래 기재 금액만 자인하고 있다

3) 다만, 원고는 위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